

2016년

『서울 희망플러스 통장』 신규참가자 모집 안내



I 희망플러스 통장이란?

- ▶ 참가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3년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1/2금액을 서울시 및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지원하여 드리는 통장입니다.
주거자금, 소규모 창업자금, 본인과 자녀의 고등교육 및 직업훈련비 마련 목적의 저축액에 지원됩니다.
- ▶ 저축기간은 적립개시일로부터 3년이며, 자산 및 소득수준에 따른 저축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 액		비 고
본인저축액(선택)	10만원	20만원	매칭지원액은 서울시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후원으로 지원됩니다.
매칭지원액	5만원	10만원	
총 적립금(3년후)	540만원+이자	1,080만원+이자	매월 적립 시

II 희망플러스 통장 신청자격은?

- ▶ 다음 1~2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1. 공고일(2016. 3. 25) 기준 만 18세 이상 서울시 거주자로, 소득인정액(근로소득 및 재산환산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5%이상~6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2. 공고일(2016. 3. 25) 기준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근로소득이 있고 현재 재직 중인 자
- ▶ 2016년 희망플러스통장 가구규모별 소득인정액 신청기준 : 기준중위소득 45%이상 60% 이하 충족

(단위 :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45%	731,174	1,244,971	1,610,559	1,976,145	2,341,732	2,707,319
기준중위소득 60%	974,899	1,659,962	2,147,411	2,634,860	3,122,309	3,609,759

* 세대주가 아니거나 최근 6개월간 근무지가 달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자영업자(단, 자활공동체 참가자 중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는 신청가능), 가구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 신청자 본인이 신용불량자인 경우(단, 법원의 파산면책 결정자, 개인회생 중인 자로 12개월 이상 채무변제자, 개인워크아웃 중인 자로 10개월 이상 채무 변제자는 신청가능), 기존 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가구(졸업가구와 중도해지가구 포함), 보건복지부 추진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희망키움 통장 I·II, 내일키움통장 등) 참여가구(※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이 목적인 '디딤씨앗통장(CDA)'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III 희망플러스 통장 신청방법은?

- ▶ 모집인원 : 총 200가구(자치구별 모집인원 배정)
- ▶ 신청기간 : 2016. 3. 25(금) ~ 4. 14(목) 근무시간 내(평일 월~금, 9~18시)
- ▶ 신청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본인 접수 원칙이나 동일가구원에 한하여 대리접수 가능)
- ▶ 제출서류 : 서울시(www.seoul.go.kr), 서울시복지재단(www.welfare.seoul.kr),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 ① 가입신청서(별도서식) 1부 : 신청자 본인 직접 작성, 증명사진 1매
 - ② 주민등록등본 1부 : 동 주민센터 자체발급
 - ③ 가구원소득신고서(별도서식) 1부 : 신청자 본인 직접 작성(동일가구원 중 소득이 있는 가구원 정보 작성)
 - ④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별도서식) 1부 : 신청자 및 동의자 직접 서명(신청자 및 동의자의 신분증 지참 필수)
 - 작성대상 : 본인 및 만 18세 이상 동일가구원 전원 ※ 배우자는 동일가구여부와 관계없이 세대가 분리되어 있을 경우에도 포함 작성
 - ⑤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별도서식) 1부
 - ⑥ 재직증명서 1부 : 최근 1년간 재직증명서(이직할 경우 전 직장 경력증명서 및 현 직장 재직증명서) ※ 전직장 폐업 시, 해당기간 직장건강보험납입증명원 또는 국민연금납입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 ⑦ 근로소득 증빙서류 1부
 - 근로소득 원천징수확인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별도서식) 등
 - ⑧ 자활사업참여자(6종, 해당자에 한함) : ①~⑦ 서류 및 자활사업참여 확인서(지역자활센터 발급 및 동주민센터 확인)
 - ※ 법원 파산면책결정자는 위 서류에 파산결정문(사본) 추가 제출, 개인회생 중인 자는 개인회생결정문(사본) 및 12개월 이상 채무변제확인서(법원 발급), 개인워크아웃 중인 자는 10개월 이상 채무변제확인서(신용회복위원회) 제출
 - ※ 필요시, 임대차계약서, 자동차 보험증서(해당자) 등 재산에 관한 증빙자료 징구 가능
- ▶ 선발일정 : 면접심사 2016. 6. 11(토) ~ 6. 13(월) ※ 선발일정은 자치구별로 변동될 수 있음
- ▶ 최종 선정여부는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거쳐 2016년 6월말에 다산콜센터 120(국번없이), 해당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 기타 문의사항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120(국번없이), 주소지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

2016. 3. 25.